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 기획경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순자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5명의 동료의원들께서 찬성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어 정책과 행정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자치법규 역시 양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자치법규의 증가 이면에는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부족, 실질적 규범력의 미흡 등 실효성이 낮은 자치법규들이 양산되고 있어 자치법규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과 불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법규에 대한 정기적인 입법영향 분석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고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서울시장에게 2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입법평가를 담당하는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하며, 입법평가위원회의 종합결과보고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